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3-181
----------	-------

제출년월일 : 2003. 11.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함(안 제2조).

-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000만원이하
-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500만원이하
-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00만원이하

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3조).

다.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함(안 제4조).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시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사용한다.

③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조 (의견청취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서를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①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법 제14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이

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파주시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8조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조례) 파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제2조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련법조항	부 과 기 준	한도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법 제144조 제1항제2호	· 토지가격의 3/100	1,000만원
2.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동안 방치한 경우 (단,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함)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가. 1월초과 1년 6월이내		· 토지가격의 4/100	100만원
나. 1년6월초과 2년이내		· 토지가격의 8/100	300만원
다. 2년초과		·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
3.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
4.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 토지가격의 10/100	500만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 분 의 되 는	원 인 이 사 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 건 제 출	제 출 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까지				

파 주 시 장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의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진술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파주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파 주 시

문서번호 : (전화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부과 · 징수 결정통지서

귀하께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반 장 소	상호(명칭)		업 종	
	소 재 지			
위 반 사 항	위반사항		위반내용	
	산출근거			
과태료금액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파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한		
납부장소	파주시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위의 과태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주 시 장(인)			
년 월 일			

과태료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한		
납부장소	파주시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파주시장 (인) 수납인			
년 월 일			

영수필 통지서 (시정보관용)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한		
납부장소	파주시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 지합니다.			
파주시장 귀하 수납인			
년 월 일			

영 수 증 (납입자보관용)			
제 호	일반회계	년	
위반사항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과태료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한		
납부장소	파주시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취급자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변경)통지서

제 호 :
주 소 :
성 명 : 귀하

과태료납부 통 지 번 호	고 지 금 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과 주 시

문서번호 : (전화번호) 시행년월일 . . .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 및 불 복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과태료 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끝.

과 주 시 장 (인)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납부의무자			금 액	과태료처분 통 지 일	징 수 부 발 일	납부기간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성 명	주 소					당 초	독 측		이의제기일	이의제기 법원통보일